

의안번호	2219538
의 퇴 인	이해식의원
회 답 일	2026.9.9.
추계번호	26D3100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3억 4,200만원, 2027년 102억 6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136억 200만원(연평균 68억 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합계	평균
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(안 제9조)	3,342	10,260	13,602	6,801

주: 본 추계는 현행 조사위원회의 인력 및 사업 규모가 동일한 상황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	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함 ※ 현행법은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되,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(개정안은 해당 단서를 삭제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9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	0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법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기한은 2026년 9월 16일까지이고,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는 활동기한은 2027년 9월 16일까지임
 - 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, 현행법 제9조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활동기간을 2026년 9월 16일까지 3개월 연장한 바 있음

- 현행법 제9조(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)

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- 조사위원회 활동기간

: (현행) 2025.6.17.~2026.9.16.(1년 3개월) → (개정안) 2025.6.17.~2027.9.16.(2년 3개월)

- 비용추계 대상 기간

: 2026.9.17.~2027.9.16.(1년)

- 현행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한 활동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

- 개정안은 현행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 연장된 활동기한(2026년 9월 16일)을 기준으로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므로, 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장분은 현행 활동기간에 포함하여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함
 - 제9조제2항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연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고려하지 않고, 2027년 9월 16일에 활동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
-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되어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 운영비, 인건비, 기본경비로 구분하여 추계하며,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액을 준용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과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를 적용함
-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따라 2026년 9월 17일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위원회 운영비)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, 위원회 운영비는 2026년 7억 4,400만원, 2027년 22억 7,700만원 등 2년간 총 30억 2,100만원으로 추계됨
- 2026년도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회 운영비 예산은 2,860백만원으로, 정부는 조사활동 9개월, 종합보고서 작성 3개월을 전제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음
 - 종합보고서 작성 예산을 제외한 위원회 운영 9개월분의 예산은 2,232백만원이며, **1개월당 위원회 운영비 금액은 248백만원임**

1) 소비자물가상승률,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(2026.3.30. 경제전망 기준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0	2.0	2.0	2.0	2.0
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(%)	3.0	3.0	3.0	3.0	3.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의 전제에 따라,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26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, 2027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 - 2027년도 1개월당 운영비는 2026년도 1개월당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2]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합계
1개월당 위원회 운영비	248	253	-
연장 개월 수	3	9	-
위원회 운영비	744	2,277	3,02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인건비)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1억 7,600만원, 2027년 36억 3,600만원 등 2년간 총 48억 1,200만원으로 추계됨

- 2026년도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인건비 예산은 4,707백만원임
 - 위 금액은 조사활동 9개월 및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 연장이 반영된 12개월분의 인건비 금액임
 - **2026년의 1개월당 인건비는 392백만원임**
- 추계의 전제에 따라,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26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, 2027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의 인건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 - 2027년도 1개월당 인건비는 2026년도 1개월당 인건비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

[표 3]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합계
1개월당 인건비	392	404	-
연장 개월 수	3	9	-
인건비	1,176	3,636	4,81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기본경비)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4억 2,200만원, 2027년 43억 4,700만원 등 2년간 총 57억 6,900만원으로 추계됨

- 2026년도 10·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기본경비 예산은 5,684백만원임
 - － 위 금액은 조사활동 9개월 및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3개월 연장이 반영된 12개월분의 기본경비 금액임
 - － 2026년의 1개월당 기본경비는 474백만원임
- 추계의 전제에 따라, 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26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의, 2027년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의 기본경비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
 - － 2027년도 1개월당 기본경비는 2026년도 1개월당 기본경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

[표 4]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합계
1개월당 기본경비	474	483	—
연장 개월 수	3	9	—
기본경비	1,422	4,347	5,76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3억 4,200만원, 2027년 102억 6,000만원 등 2년간 총 136억 2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5]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27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합계
위원회 운영비	744	2,277	3,021
인건비	1,176	3,636	4,812
기본경비	1,422	4,347	5,769
합계	3,342	10,260	13,60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현행 조사위원회의 인력 및 사업 규모가 동일한 상황에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